
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곽규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86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7.

발 의 자 : 곽규택 · 김대식 · 이현승
박형수 · 최수진 · 서천호
이상휘 · 최보윤 · 강승규
유용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기의 운항시각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배분된 운항시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분된 운항시각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국내선에 배정된 슬롯이 운항시각 조정지침상 최소 사용기준인 80%를 충족하는 수준으로만 운영되는 경우, 현행 제도상으로는 해당 슬롯을 회수 또는 재배분할 수 없음. 이렇게 될 경우 항공사가 최소 사용 기준에 맞춰 소극적인 운항을 지속하는 문제로 이어지고, 그 결과 공항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됨과 동시에 국내선 항공 서비스의 지역 간 적정 배분을 유도하는 데에도 한계를 초래하게 됨.

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가 배분된 운항시각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1년에 1회 이상 평가하여 고시하도록 하고, 해당

평가 결과를 국제항공 운수권 및 영공통과이용권의 신규 배분 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2항,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9항).
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면허기준 및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에 따른 합의사항 등”을 “면허기준,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에 따른 합의사항 및 제18조제9항에 따른 평가결과 등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면허기준 및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에 따른 합의사항 등”을 “면허기준,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에 따른 합의사항 및 제18조제9항에 따른 평가결과 등”으로 한다.

제18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분된 운항시각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6조(국제항공 운수권의 배분 등) ① (생략)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수권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<u>면허 기준 및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에 따른 합의사항 등을 고려</u> 하여야 한다. ③·④ (생략)	제16조(국제항공 운수권의 배분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<u>면허 기준,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에 따른 합의사항 및 제18조제9항에 따른 평가결과 등</u> -----. 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17조(영공통과이용권의 배분 등) ① (생략)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공통과이용권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<u>면허기준 및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에 따른 합의사항 등을 고려</u> 하여야 한다. ③·④ (생략)	제17조(영공통과이용권의 배분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 <u>면허기준,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에 따른 합의사항 및 제18조제9항에 따른 평가결과 등</u> -----. 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18조(항공기 운항시각의 배분 등) ① ~ ⑧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8조(항공기 운항시각의 배분 등) ① ~ ⑧ (현행과 같음) ⑨ <u>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</u>

	<u>따라 배분된 운항시각을 준수</u> <u>하고 있는지 여부를 국토교통</u> <u>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</u> <u>년에 1회 이상 평가하여 그 결</u> <u>과를 고시하여야 한다.</u>
--	---